

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

제정	2001. 11. 10	조례 제 359호
개정	2005. 10. 5	조례 제 757호
	2008. 10. 8	조례 제 960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	2012. 12. 11	조례 제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7. 11. 6	조례 제172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7. 11. 6]

제1조의2(설치)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에 따라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[본조신설 2017. 11. 6]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7. 11. 6>

②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·소장이 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8. 10. 8, 2017. 11. 6>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단,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8. 10. 8, 2017. 11. 6>

1.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
2. 대중교통업무 담당 부서의 장
3. 도로업무 담당 부서의 장
4. 용인시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장
5.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업무 담당관·과장
6.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장

- 7. 경기도건설본부 도로시설팀장
- 8.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안전관리처장
- 9.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
- 10.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11. 교통안전참여단체의 회원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단서삭제 2017. 11. 6>

⑤ 시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 <신설 2005. 10. 5, 개정 2017. 11. 6>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08. 10. 8, 2017. 11. 6>

- 1.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심의(5년마다)
- 2. 지방교통안전시행계획 심의(매년)
- 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4조(위원장의 의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5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 <개정 2017. 11. 6>

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,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7. 11. 6>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고,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7. 11. 6>

③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. <신설 2005. 10. 5, 개정 2017. 11. 6>

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. <신설 2005. 10. 5>

제7조(위촉장의 교부) 시장은 용인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1. 6>

제8조(수당과 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10. 5, 2012. 12. 11, 2017. 11. 6>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757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10. 8 조례 제96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를 인용한 조항은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.

별표 생략.

부칙 <2017. 11. 6 조례 제172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